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2. 27.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2월 13일

나. 제출자 : 고기판 의원 외 6인

다. 회부일자 : 2012년 2월 16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2. 2.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기판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제를 마련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 차원의 체계적인 이미지 가치 제고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등포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 추진
(안 4조부터 제5조까지)
-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관제기관 등의 협조요청(안 제13조)
- 정보제공 및 여론조사(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제를 마련하고, 이미지 향상의 중요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이미지 관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이미지 가치 제고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도시이미지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총 15조 구성되어 있으며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구의 책무를,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에서는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해 구 이미지의 현황과 전망, 연차별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 이미지 가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이미지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에 대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미지 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안 제6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끝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국내·외 홍보와 과제 육성을 위한 구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의 이미지 가치 향상 사업을 위하여 구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구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자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미지 가치를 향상시켜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 시행에 있어 안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구의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민간 등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 또한 구 이미지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실적 평가 등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홍보업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홍보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1
----------	-----

발의년월일 : 2012년 2월 9 일

발 의 자 : 고기관 의원 외 6 명

1. 제안이유

영등포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 차원의 체계적인 이미지 가치 제고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등포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추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안 제13조)
- 라. 정보제공 및 여론조사(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구청 관련 부서 의견 별첨

라. 기 타

1) 입법예고 결과 : 생략

가)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

나) 사 유 :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영등포구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문화·환경·구민·인프라·여가생활 등 구의 유형·무형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구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이미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이미지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구 이미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4. 구 이미지 가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구 이미지 사업의 평가지수 개발 및 추진 실적 평가

6. 그 밖의 이미지 가치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 이미지 관리 과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의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 이미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구 이미지 관리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구 이미지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구 이미지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5. 구 이미지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구 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구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6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3. 구 이미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 및 과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제공 및 여론조사) ① 구청장은 구 이미지에 관련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이미지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